



제 427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모욕죄 및 위증죄 벌금형 신설〉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44호)

2025.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권향엽 · 김문수 · 이병진 · 박지원 · 정동영 · 이수진
윤준병 · 민병덕 · 김영호 · 한창민 · 허성무 · 문진석
윤종균 의원(13인)

2. 제 안 일 : 2025. 2. 13.

3. 회 부 일 : 2025. 2. 14.

※ 의안번호 : 814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형 측면에서 벌금형이 배제되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용이하지 않아 벌금형 도입으로 형량범위를 확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규정함으로써 위증행위의 경중과 국회모욕행위에 따른 처벌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처벌의 형평성 및 국회

증언·감정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법정형 사이의 균형성을 확보
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국회모욕의 죄(증인의 동행명령 거부·회피 및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 및 위증의 죄(선서한 증인·감정인의 허위 진술·감정)에 대하여 벌금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생 략)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현행과 같음)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u>징역</u> 에 처한다.	② ----- ----- ----- ----- ----- <u>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u> -----.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u>징역</u> 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 ----- ----- ----- ----- <u>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국회증언 감정법”이라 함)은 불출석 등의 죄, 국회모욕의 죄, 위증 등의 죄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어,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위증을 방지하는 등 국회의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원활하고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중 ①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 ②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감정을 하였을 때에 대한 법정형은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만 규정함으로써, 다른 위반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표-2]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상 벌칙규정

구성요건		법정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제13조 국회 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	5년 이하 징역
제14조 위증 등의 죄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이와 같은 증인의 동행명령 거부·회피 및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에 대한 벌금형 없는 징역형(5년 이하의 징역)은 동행명령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1988년 국회증언감정법 전부개정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고,¹⁾ 선서한 증인·감정인의 허위 진술·감정에 대한 벌금형 없는 징역형은 1975년 국회증언감정법 제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1988년 국회증언감정법 전부개정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징역형의 하한을 설정하여 법정형을 강화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음.²⁾

한편, 「형법」상 위증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위증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형법」상 위증죄³⁾에 비하여 무겁게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⁴⁾

1) 참고로, 제정 국회증언감정법에서는 국회모욕의 죄에 해당하는 ① 증인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한 때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7년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시 전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신설하면서도 후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신설하지 않았음.

1988년 국회증언감정법(1988. 8. 5. 전부개정·시행) 제13조(국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7년 국회증언감정법(2017. 3. 21. 일부개정·시행)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정 국회증언감정법(1975. 11. 29. 제정·시행) 제8조(위증·허위감정의 벌, 자백에 의한 형의 감면) ①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88년 국회증언감정법(1988. 8. 5. 전부개정·시행) 제14조(위증등의 죄) ①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3] 국회증언감정법 및 「형법」상 위증죄 비교

구 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	「형법」상 위증죄
구성요건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법정형	<u>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u>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u>
보호법익	입법, 재정, 국정통제 등에 관한 전반적인 국회 기능의 적정성	국가의 사법작용 및 사법기능

「형법」상 위증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의 조항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는 입법, 재정, 국정통제 등에 관한 전반적인 국회 기능의 적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회의 의정활동 전반,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다수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민사소송 등에서의

- 4) 참고로, 국회증언감정법 외에 현행법상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형사소송법」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및 「군사법원법」 제207조(동행명령과 구인)가 있는데, 동행명령 불응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다만, 해당 동행명령은 법원(군사법원)에 출석해 있는 증인에 대하여 법원(군사법원) 외의 증인신문 장소까지 재판부 또는 수명법관과 함께 갈 것을 명하는 결정으로서, 국회증언감정법상 동행명령과는 성격을 달리함.

「형사소송법」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②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207조(동행명령과 구인) ①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할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위증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 법정형은 그 불법의 정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관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지만 국회에서의 위증죄가 지니는 불법의 중대성, 절차의 엄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정형에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⁵⁾

국회모욕의 죄(증인의 동행명령 거부·회피 및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 및 위증의 죄(선서한 증인·감정인의 허위 진술·감정)에 대하여 벌금형을 신설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벌금형 신설에 따른 위반행위의 양태, 죄질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한 처벌의 탄력성 및 형평성 확보 측면⁶⁾과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입법목적, 국회증언감정법 제정(전부개정) 이래 징역형으로만 처벌해온 연혁적 의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의 보호법익 및 헌법재판소 판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5)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410 결정(판시내용을 발췌·요약함)

6) 제21대국회에서 동행명령거부로 고발된 증인 7명 중 2명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증으로 고발된 증인 15명 중 형을 선고받은 증인은 없음.

가 있다고 보임.⁷⁾

문 의 처

02)6788-5017

7)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구성요건과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